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1가단51636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강경필, 최하늘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D과 피고 B 사이의 2021. 1. 20. 매매계약을 41,407,361원 및 그 중 39,813,393원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2019. 2. 15. D에게 6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약정이자율 10.9%, 연체이자율 13.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채무자는 매월 상환일에 매월 납부해야 할 대출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 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고, 채무자가 월 대출금 등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D이 2021. 3. 15.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해지하였다. D은 2021. 5. 20. 기준으로 원고에게 원금 39,813,393원, 이자 1,165,648원, 가지급금 428,320원 합계 41,407,361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다. D은 2020. 11. 30. 피고 B에게 그동안 피고 B로부터 차용한 금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2020년 12월 말일까지 상환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D은 2021. 1. 20. 피고 B에게 서귀포시 F 과수원 1,927㎡(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를 매도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대물변제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2021. 2. 17.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과수원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 전부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5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약

210,000,000원인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를 인수하였고, 이와 위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합쳐서 31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 B은 2021. 3. 19. 이 사건 과수원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2021.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21. 4. 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1,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41,407,361원 및 그 중 39,813,393원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피보전채권이 있다. D은 2021. 3. 15.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는데, 그 직전인 2021. 1. 20.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한 것은 이미 대출금 상환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를 한 것이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행위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유무

D이 2021. 3. 15.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해지하였고, D이 2021. 5. 20. 기준으로 원고에게 원금 39,813,393원, 이자 1,165,648원, 가지급금 428,320원 합계 41,407,361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는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원리금을 매달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남은 원리금을 일시에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 지급으로써 원고는 D에게 대출 원리금 전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매월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도록 정했다고 하여 원고의

채권액이 기한이 도래한 매월 상환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원고의 채권액이 기한이 도래한 매월 상환액으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행위는 D이 원리금 연체를 시작한 2021. 3. 15.로부터 단 두 달 전에 이루어졌던바,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대출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두 달 후인 2021. 3. 15. D이 원리금 연체를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원리금 전액 상당의 대출금 채권에 대한 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여부

-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 2)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살핀다. 갑 제9 내지 18,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D에게 다음과 같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재산	가액	채권자	채무액
제주시 H 대 203㎡, I 대 14㎡, J 도로 11 ㎡, H 외 1필지 지상 벽돌조 및 경량철골 조 슬래브 및 판넬지 붕 단층 식품제조가 공업 115.5㎡	316,650,000원	원고	49,459,090원
서귀포시 K	110,000,000원	L조합	4,324,884원
(차량번호 1 생략) 자 동차	50,000,000원	M	120,866,154원
이 사건 과수원	310,341,000원	N	30,549,802원
(차량번호 2 생략) 굴 착기	62,000,000원	O	84,542,300원
(차량번호 3 생략) 굴 착기	10,000,000원	P	79,422,260원

(차량번호 4 생략) 굴 착기	98,000,000원	Q	15,173,938원
(차량번호 5 생략) 굴 착기	75,000,000원	R저축은행	40,347,215원
		피고 B	100,000,000원
합계	1,031,991,000원	합계	523,437,676원

3) 위 표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배경색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가) 적극재산 중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따르면 2021. 1. 20. 기준 이 사건 과수원의 가액은 545,341,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35,000,000원이다.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이 사건 과수원의 가액 중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310,341,000원(545,341,000원 - 235,000,000원)은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235,000,000원을 D의 소극재산에 포함시킨다면, 적극재산에 이 사건 과수원의 가액 545,341,000원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다.

나) 적극재산 중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굴착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이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모두 D의 소유였다. D은 2020. 9. 1. (차량번호 2 생략) 굴착기를 62,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20. 4. 29. (차량번호 3 생략) 굴착기를 1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차량번호 4 생략) 굴착기와 제조사와 규격이 동일하고 제조연식이 더 늦은 굴착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S 경매사건에서 2021. 3. 30. 기준 감정평가액이 98,000,000원이었으므로 (차량번호 4 생략) 굴착기도 동일한 가액이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차량번호 5 생략) 굴착기와 제조사, 제조연식이 동일하고 규격이 더 큰 굴착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T 경매사건에서 2021. 8. 5. 기준 감정평가액이 75,000,000원이었으므로 (차량번호 5 생략) 굴착기도 동일한 가액이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원고들은 D이 위 굴착기들을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 갑 제19호증의 2의 음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위 굴착기들이 D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고, 다른 반증이 없다.

다) 소극재산 중 D의 R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 20. 기준 D의 R저축은행에 대한 채무가 40,347,21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극재산 중 D의 피고 B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처분행위 전 피고 B에게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4) 결국 D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행위로써 적극재산이 721,650,000원(1,031,991,000원 - 310,341,000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소극재산은 423,437,476원(523,437,676원 -

100,000,000원)으로 여전히 적극재산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행위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주연